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2. 3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현행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은 계약·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·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, 행정안전부의 “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”을 반영하여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탁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,
-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1조)
- “위탁기관”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(안 제2조2호)
- “위탁기관”을 “교육감”으로 변경(안 제2조제3호, 제4조제1항 등)

-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와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.
-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, 계약 해제 사항 추가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이유

-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, 계약 내용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탁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, 조례의 용어 중 ‘위탁기관’을 ‘교육감’으로 변경하여 위탁 주체를 명확히 하며,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

-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, 안 제2조, 안 제4조 등에서 조례의 용어 중 ‘위탁기관’을 ‘교육감’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탁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관리·감독 등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,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

그 선정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,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

- 또한 안 제9조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 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고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,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음.
- 이 같은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2020년 8월 31일 “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정비계획과 지침”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며,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및 향후 추진하게 될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2022. 충청북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 현황

(단위:천원)

순	부서명	사업명	계약자	위탁기간	금액	심의일자	비고
1	학교 자치과	학교협동조합운영	(주)사람과경제	'22. 1. 1~ '24.12.31.	30,000	제371회 정례회 ('19.3월)	재계약 (세 번째)
2	학교 자치과	여학생 가정형 위(Wee)센터운영	사단법인 유스투게더	'21. 1. 1~ '22.12.31.	299,960	제377회 정례회 ('19.12월)	재계약 (첫 번째)
3	학교 자치과	남학생 가정형 위(Wee)센터운영	사단법인 유스투게더	'22. 1. 1~ '24.12.31.	288,495	제384회 정례회 ('20.10월)	재계약 (첫 번째)
4	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	초록학교만들기 민간위탁사업	(사)풀꿈 환경재단	'21. 1. 1~ '22.12.31.	250,000	제377회 정례회 ('19.12월)	재계약 (첫 번째)
5	괴산증평 교육지원청	괴산 마을교육공동체	행복교육 괴산어울림	'22. 1. 1~ '22.12.31.	100,000	제384회 정례회 ('20.10월)	재계약 (첫 번째)
합 계 (5건)					968,455		

※자료제공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(2022. 2.)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, 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